# 한국도로공사 2021년 하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8급 공채-고졸(일반전형), 고졸(보훈전형), 경력단절여성등전형]

### 1. 선발분야 및 인원

 구 분		궤	행 정 직	기 술 직							
丁	ਦ	계	행 정	토 목	전 기	기계	설 비	전 산	전 자		
고졸공채	일반전형	15	2	8	1	1	1	1	1		
끄글공재	보훈전형	2	2								
경력단절여성등전형		2	2								

※ 분야별 수행 직무는 NCS 직무기술서 참조

### 2. 채용직급: 인턴사원(채용형)

※ 인턴 신분으로 교육 및 현장실습기간(3개월 내외, 단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8급) 임용

#### 3.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공 통	□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에 도달하는 자 제외) □ 병역사항 제한없음 (단,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 □ 인턴채용일('21.12. 6 예정)로 부터 근무 가능자(사업장 전국 소재) □ 선발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붙임 2]
고졸공채	□ 성별 제한 없음 □ 채용공고 마감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2년 2월 졸업예정인 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전문대 이상 중퇴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지원 가능. 단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지는 지원불가(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재학, 휴학 또는 졸업유예자 지원불가) ※ 전문대 이상의 졸업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최종학력 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 휴학, 중퇴 증명서 등 - 한국장학재단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등 □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붙임3]
경력단절 여성등전형	<ul> <li>□ 학력 제한 없음</li> <li>□ 혼인·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li> <li>※ 중빙서류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li> <li>-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li> <li>- 혼인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입증서류</li> </ul>

※ 자격증, 부가가점 대상 등 모든 자격요건, 평가 및 우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 ('21. 9. 30) 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4. 전형별 주요내용

4. USE		13-3 ( 3 3)
전형단계	내 <del>용</del>	일정(예정)
	□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ex.co.kr)	9.16(목) ~
원서접수	- 역량기술서, 선발 분야별 필수자격증[붙임2], 부가가점[붙임3],	<mark>9.30(목)15:00</mark> (기간 내 24시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등 기입	입력 가능)
	□ 선발인원 : 지원자격 충족 및 역량기술서 적합시 전원 선발	
	□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필기전형	
	대상자를 우선 결정함	
	□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 10. 8(금) ~ 10. 12(화) 17:00	
	① 필기전형 대상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입력	
	② 해당자는 부가가점 증빙서류 스캔파일 등록 [붙임 3, 4]	
	※ 본인인증 기간 내 입력한 정보를 통해 필수자격증, 부가가점 등의	
	전위여부를 확인하며, 본인인증을 미실시 하는 경우 필기전형 응시 불가 ※ 진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인정기준 [붙임 3, 4]	
	① 정부24(www.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등록)한 서류만 인정	<mark>필기전형</mark>
서류전형	② 채용공고일('21.9.16 포함)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대상자 발표 :
711 2 0	□ 채용절차 진행 중 허위·오기재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으로는	10.8(금)예정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탈락처리 등 불이익 처리하므로	
	입사지원 및 본인인증시 자격증번호, 생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입	
	※ 미기재·오기재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응시자로 간주하며 탈락 처리함	
	(단, 부가가점 및 우대사항 등이 평가에 반영되기 전인 경우에는 평가 미적용) □ 이 시 기 이 서 사 이 런 디 가족 기 이 기 거 미 으 데 시 하 드 이 존 비	
	□ 입사지원서 상 입력된 각종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의 증빙 ■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타기관 지원서 입력, 표절, 블라인드 위반 등)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	
	□ 시험장소 : 서울, 대구 (필기시험 장소는 입사지원시 선택)	
	※ 단, 응시희망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 일부 지원자는 희망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정될 수 있음	
	※ 특정지역 편중시 시험장소 배정순서: ①장애인 ②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이 빠른 순	
	※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서울 및 대구 인근지역에서 필기전형 실시 가능 ※ 세부 시험장소는 <mark>필기전형 공고(10.19 예정)</mark> 시 확정(홈페이지상 개별 확인)	필기시험일:
	□ 평가항목 [붙임 5]: 직업기초능력평가(100%)	10.23(토)
필기전형	□ 선발방법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부가가점 [붙임 3] 합산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40% 미만 득점(과락)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
	※ 필기전형 불합격자에 한해 합격 커트라인 및 본인 점수 공개 예정	10월 말 예정
	(필수자격증 등 조회 불가자는 미응시자로 간주하여 비공개)	
	□ 선발인원 ※ 동점자 전원선발	
	- 선발인원이 6명 이상인 분야 :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 선발인원이 5명 이하인 분야 :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 <sup>안전하고 편리한</sup> <sup>७००</sup> 이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

전형단계	내 <del>용</del>	일정(예정)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ul><li>□ 면접전형(직무 및 인성) :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종합평가(발표 등)</li><li>□ 인성검사(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당일 실시 및 부적격자 탈락</li></ul>	추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필기전형 점수, 면접전형 점수, 법정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	추후통보

### 5. 채용목표제

구 분	고졸공채
이전지역인재	□ 대 상 최종학력기준 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단, 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제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학교 측에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목표비율 각 전형별(필기·면접) 선발예정인원의 27% □ 방 법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필기·면접) 선발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7%'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3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단, 과락자는 제외)
양성평등	□ 목표비율 각 전형(필기·면접)별 선발 예정인원의 25% □ 방 법 특정 성별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필기·면접) 선발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5%'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3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단, 과락자는 제외)

### 6. 합격자 근무조건

o 보수수준 : 200만원 수준/월 (단, 8급 임용 시에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

o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o 복지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 7. 근무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 사업장(본사 및 전국소재 기관)



## 안전하고 편리한 변수》 (기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

## 8.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상기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 및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별, 선발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입력착오 (미기재, 오기재, 공유로 인한 표절 등)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 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부가가점 대상자 등 모든 자격요건, 평가 및 우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 ('21.9.30) 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진위확인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21.9.16 포함)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본인인증 정보를 통해 필수자격증 등의 진위여부 확인 불가로 탈락처리 되는 자는 필기시험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미 응시자로 간주하여 필기전형 합격 커트라인 및 본인점수 공개가 불가하니 입사지원서 등 정보기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 시스템상 제출버튼 클릭 시 저장 및 자동제출 되며, 별도 최종제출 버튼 없음(접수기간 내 수정 가능)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시 부적격(탈락)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사전배제, 합격 취소,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은** 한국도로공사

# 안전하고 <mark>편리한 (도)에 (조)이 이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mark>

알려드립니다.

전형별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과락,	인성검사	불합격	등)하는	경우	합격배수,	선발
예정인	원보다 적-	은 인원	원을 선택	발할 수 있습	습니다.					

- □ 최종 합격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방법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 □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한 안정적인 채용절차 운영을 위해 면접의 경우 필요시에는 온라인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 전형별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전형단계별 합격자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접수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안내시 공지(예정)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9.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필기 '	및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를	시행하	·고자	합니	ᆡㄷ	∤.
--	--	---------	------	------	---	------	---	-----	-------	-----	-----	----	----	----

- □ 시험장 입구에서 ① 발열검사, ② 손소독 시행, ③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합니다.
- □ 다음의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및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①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②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③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④ 마스크 미 착용자
  - ※ 발열(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시 37.5℃ 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 문 의 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 붙 임: 1.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8조) 1부
  - 2. 필수 자격증 기준 1부
  - 3. 부가가점 기준 1부
  - 4. 부가점수 및 우대사항 증빙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 5. 필기시험 출제 범위 1부
  - 6.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1부. 끝.

#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9.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필수 자격증 기준

구	분	대상자격
행	정	전산회계운용사1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전산회계운용사3급, (부기 1급 ~ 3급 포함),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토	목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환경기능사, 측량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전	기	전기기능사
기계,	/설비	기계가공조립기능사(기계조립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메카트로닉스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배관기능사, 환경기능사
전산,	/전자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기술직(토목·전기·기계·설비·전산·전자)의 경우 해당분야 기사(산업기사) 포함



# 부가가점 기준

### □ 법정 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7L 기처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전형별 만점의 5% / 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370 / 107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선택 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고
재직직원	2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시간선택제 직원의	필기시험	
세식식전	경우 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환산하여 적용)	만점의 5%	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공사 체험형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필기시험	
청년인턴	(계약 만료후 2년이내, 채용시 소멸)	만점의 2%	0 가장 유리한 선택가점
علاماا ج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필기시험	하나만 적용함
장애인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만점의 5%	

### □ 자격증 가점

	구 분	부가점수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
7 F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공 통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2급	" Z 70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행 정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 10%
기 술	해당 직종 기술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 10%
	해당 직종 기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i>"</i> 3%

- ※ 가점계산 방법: 법정 가점 + 선택 가점(재직직원, 체험형인턴, 장애인 중 택 1) + 자격증 가점
- ※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10%(10점) 초과불가
- ※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부가점수 증빙방법 및 유의사항

### □ 부가가점 증빙방법

구 분	대 상	우대사항	증빙 방법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ul>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li> <li>① 입사지원 시 보훈번호, 가점비율 등 입력</li> <li>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li> <li>- 출생년도, 성별정보 수집</li> </ul>		
선택 가점	재직직원	필기시험 만점의 5%	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 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 출생년도, 성별정보 수집		
	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필기시험 만점의 2%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ul>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li> <li>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li> <li>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li> <li>출생년도, 성별정보 수집</li> <li>장애인증명서 스캔본 첨부</li> </ul>		
자격증 가점	공통	필기시험 만점의 1%~3%	① 이시지의 시 지경주면 지경비를 드 이경		
	행정	필기시험 만점의 10%	① 입사지원 시 자격증명, 자격번호 등 입력 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 출생년도, 성별정보 수집		
	기술	필기시험 만점의 3%/10%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각종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 유의사항

- o 취업지원대상자
  - 입사지원 내용 및 본인인증 기간에 기재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우선 확인 하므로 보훈번호·가점비율 등의 정보입력에 유의
- o 장애인
  - 입사지원 내용 및 본인인증 기간에 기재한 정보와 본인인증 기간에 시스템에 첨부한 해당 증명서(확인서)로 진위여부 확인
  - 해당 증명서(확인서)는 반드시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며, 공고일(2021.9.16. 포함)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유의
- o 자격증 등
  - 입사지원 및 본인인증 기간에 작성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우선 확인 하므로 자격번호, 자격증명, 생년월일, 성별정보 등의 정보입력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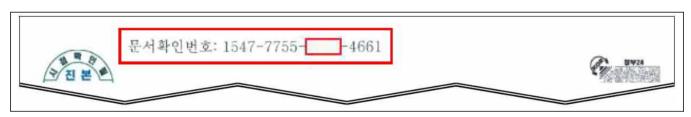




### □ 제출서류 출력방법

구 분		출력경로(정부24 : www.gov.kr)			
	장애인증명서발급				
	신정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죽시(근무시간 내 3시간)	
장애인 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애인증명서(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 (장애안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 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 다.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정부24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상단의 문서 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 직업기초능력평가

구 분	출 제 과 목
행정직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직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발췌)

####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 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나.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 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 과학기술원



# 인전하고 <mark>편리한 (도)에 이기 이기 교통 플랫폼 기업</mark>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 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⑦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 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다.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②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②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 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印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②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①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미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ㅇ 미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ㅇ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미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ㅇ 미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며 재학중 : 해당
- 다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 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 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ㅇ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미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미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무>
  - ㅇ 미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며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미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미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미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ㅇ 미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ㅇ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ㅇ 미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ㅇ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미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 ※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 등 관계법령 참고

